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0. 7. 16.(금)

#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근]

## 【 목 차 】

1.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15
3.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의안번호 제2010 - 28>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년 6월 30일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년 7월 8일

### II. 제안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임.

### III.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심의기능 :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해당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지원·용자, 국·공유지 임대 및 불용품 무상양여 등 시설비 등의 지원(안 제6조)
- 경영·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경영지원(안 제7조)
-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민간소비 장려 등의 판로 개척(안 제8조)
-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9조)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 장려(안 제10조)
-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공동 추진과 사회적기업등의 설립·육성 참여 확충을 위한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안 제11조)
-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안 제12조)

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반환, 보고 및 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 VI.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나. 예산조치 : 2010년 추경예산으로 확보(50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6. 9. ~ 6. 2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I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07. 1. 3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 안 제1조부터 제2조(목적 및 정의)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필요조항이며,

(2) 안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안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안 제6조(시설비 등의 지원), 안 제7조(경영지원 등), 안 제8조(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안 제13조(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 발굴·육성, 지원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안 제9조(지방세 감면)는 사회적기업 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거창군세 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5) 안 제10조(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 안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는 군수가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확충하는 것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0.7.5] [법률제10339호, 2010.6. 4, 타법개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6.4>

③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5조(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조(경영지원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7.4.11, 2009.5.21>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6조(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4조(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육성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된다)의 부설 연구기관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5호, 2010.6.8, 일부개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1호, 2010.6.28, 타법개정]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관리전환되지 않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전문개정 2009.4.24]

# 〔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년 6월 30일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년 7월 8일

## II. 제안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III.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과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공표, 구매실적관리, 구매의무의 범위 및 구매

예외사항,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및 구매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내기업 및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지원, 친환경상품 관련정보의 제공,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와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촉진 유공자 포상,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VI.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예산조치 : 사안발생 시 추경예산 확보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재무과(경리담당),  
건설과(건설행정담당)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6. 8. ~ 6.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I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04. 12. 31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부터 제2조(목적 및 정의)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필요 조항이며,
  - (2) 안 제2장(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 이행)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심의,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공표, 실적관리, 구매의무의 범위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3) 안 제3장(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은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산·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정보제공,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을 기술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 계 법 령

###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30호, 2010. 2. 4, 일부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년 6월 30일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년 7월 8일

### II. 제안이유

- 시·도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역재향군인회장'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

### III. 주요내용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 회의개최, 실무위원회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취약지역의 선정·해제권한이 통합방위본부장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지사 등 시·도지사로 변경되고, 선정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의 규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시책을 마련토록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발생에 따른 작전 수행 시 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신설).

## VI.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통합방위법」 제3조, 제5조, 제22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6. 1. ~ 6. 2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가. 관계법규

#### I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09. 5. 21 「통합방위법」 개정, 2009. 11. 17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역재향군인회장”을 군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법에 맞지 않는 제5조를 삭제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제6조를 신설하는 등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상으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30
----------	-----------

제출연월일	2010.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시·도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나. 회의개최, 실무위원회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다.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취약지역의 선정·해제권한이 통합방위본부장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지사 등 시·도지사로 변경되고, 선정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의 규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시책을 마련토록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발생에 따른 작전 수행 시 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통합방위법」 제3조, 제5조, 제22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6. 1. ~ 6. 2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제3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운영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① (생 략)
② 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②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신 설>	④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협의회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신 설>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③ (생 략)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 「통합방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p> <p>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p> <p>다. 취약지역 주민 신고망의 조직</p> <p>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p> <p>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p> <p>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 활동의 실시</p> <p>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p> <p>가. 10년생 이상의 입목</p> <p>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p> <p>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p> <p>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72 331 320 371">&lt;신설&gt;</p> <p data-bbox="172 745 576 786">제6조(운영규칙) (생략)</p>	<p data-bbox="810 331 1437 647">제6조(거창군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p> <p data-bbox="810 745 1410 786">제7조(운영세칙) (현행 제6조와 같음)</p>

## 관계법령

### □ 「통합방위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3조(통합방위대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대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대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이하 생략)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 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 □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27호, 2009.11.17, 일부개정]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7]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11.17>]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전문개정 2009.11.17]

[제28조에서 이동 <2009.11.17>]

